

영등포구의회  
제21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정선희 의원 발의】



2019. 9. 27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153호로 2019년 9월 19일 정선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 
발의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구민의 의견이 충실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  
적인 자치행정 실현과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시설관리공단 사무의 제3자 대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시 구의  
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(안 제25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. ~ 9. 16.)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,
  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25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의 제3자 대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 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.
  
- 검토결과,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행사무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공단 조직과 인력 운영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, 타당성 등에 대한 구의회 차원에서의 사전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지방자치법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